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1/2561 호

주식 시장에서 상장된 회사(MAI)의 투자 지원을 하는 투자지원 정책

2012 년 12 월 3 일에 고시된 투자위원회 종합안내사항은 태국 기업가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투자 진흥법 불교년 2520 년의 16 조,18 조,31 조를 따르며 이는 주식시장의 상장된 회사 (MAI)에 투자지원하는 투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시함

1. 투자 촉진을받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회사 (MAI)로 등록 된 회사는 31 조 1 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권리 및 혜택을 얻으며 투자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100 % 의 법인세를 면제받음 (토지 비용 및 운전 자본 제외)
2. 투자지원을 받기로한 프로젝트는 수입이 얼마가 생기든 권리와 혜택을 요청할수있는데 이는 권리와 혜택을 요청할수있는 규정으로 정해진 일이어야하고 31 조 1 항에 따른 모든 기간과 법인세 면제를 받는 금액의 범위가 해당
3. (MAI)주식시장에 등록을 투자지원요청을 하기전에 해야하며 (MAI)주식시장에 등록하는 날이란 (MAI)주식시장이 (MAI)주식시장에서의 상장된 회사로 요청을 하는 날을 의미함.
4. 2020 년 12 월 30 일까지 권리와 혜택을 규정에 맞게 요청해야함
5. (MAI)주식시장에 이 공고가 나기전에 이미 등록을 한 회사는 권리와 혜택을 요청할수없는 범위에 속함
2017 년 11 월 23 일 이후에 적용
2018 년 1 월 31 일에 고시

General Prayut Chan-o-cha

투자촉진위원회장